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1356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13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1996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AA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AB법률 담당변호사 정BA)

【피고,피상고인】 상CA민은행직CB조합외 9(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CC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BB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나199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결성한 '상봉동

○○아파트 EA조합'(이하 EA조합이라 한다)의 총무인 소외 서DA가 전체 조합원들의 관리와 경리사무 등 조합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위 서DA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위 서DA가 EA조합장인 양HA 명의의 어음배서를 위조한 행위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EA조합은 개별 주택조합의 단순한 업무집행기관으로 볼 수 없는 독립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1998. 4. 23. 선고 95다2647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서DA가 EA조합장인 양HA 명의의 어음배서를 위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조합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을 물으면서도, 위 서DA의 지위를 단순히 EA조합의 총무라고만 주장할 뿐, 개별 주택조합인 피고들이 불법행위자인 위 서DA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즉 사용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서DA가 EA조합의 총무로서 간접적으로 개별 주택조합인 피고들의 일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주택조합인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위 서DA의 직무권한이 위와 같이 막연한 상황이라면 위 서DA가 EA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인 양HA 명의의 어음배서를 위조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들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게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는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시공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정F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도급인인 주택조합이 아무런 대가 등의 조건도 없이 배서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서는 '상CA민은행직CB조합 외 9개 조합 조합장 양H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1 상CA민은행직CB조합의 조합장 직인을 찍은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는 측면까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그 배서의 진정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적어도 위 양HA에게 확인하였어야 하고, 만약 이를 확인해 보았다면 쉽게 그 진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발행인인 위 주식회사 정F으로 하여금 배서를 받아오도록 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서DA가 한 배서가 피고들의 사무집행행위에

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서DA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